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가합51187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선우전자통신 주식회사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17. 6. 3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657,551원과 그중 369,657,007원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선우전자통신 주식회사와 체결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선우전자통신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에 특허청 2015. 12. 15. 접수 C로 마친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재판장판사함석천

판사김병만

판사박혜림

별지